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New



우리 회사, 중소기업일까? 아닐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죠?

2015년 1월 1일부터 확~ 달라집니다.

이제 **업종별 규모**는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확~ 바뀝니다!

더 간단하게!
더 쉽게!



중소기업청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

New



2015년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확~ 바뀝니다!

더 간단하게!
더 쉽게!



중소기업청



이렇게 바뀝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WOW



업종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평균 매출액 적용 기준

KNOW



업력에 따라 이렇게 합니다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GROW



2015년 주요 개편 내용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의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의 복잡한 방식에서 3년 평균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개정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자산총액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해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부여

- 관계기업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단, 유예기간은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최초 1회로 제한
- 창업한 중소기업이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는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 적용

관계기업 산정 기준

창업·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창업·합병·분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적용기준



1,500

억원

6개 제조업(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1,000

억원

12개 제조업(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품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800

억원

6개 제조업(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출판·정보서비스업



600

억원

5개 서비스업(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400

억원

4개 서비스업(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업종별 규모 적용 시 주업종 판단기준

- 여러 업종을 할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을 합하여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
- 관계기업에 따른 주업종 적용은 관계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

업력별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사업연도가 36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해당 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 후 3으로 나눈 금액



사업연도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2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 후 2로 나눈 금액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1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12개월은 넘었지만 1개 사업연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역으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창업·합병·분할일이 산정일이 속하는 달이거나 다음달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경과규정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2014년 4월 14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 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조합(법인격 없는 사업단 제외)

중소기업 적용 대상 요건(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통 해당)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요건 충족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외
- 관계기업 적용 기준 충족(영리기업인 경우 해당)